

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2차

2021. 12. 28.



보건복지부



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2차

□ 목적

- 코로나-19 장기화 및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한시적 급여비용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, 원활한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으로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

□ 기본원칙

- 동 지침은 코호트 격리가 적용된 입소시설의 운영지원 등 조치를 위하여 **각 특례별 적용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** 한시적으로 운영 한시적 운영

연번	특례별 구분	지침 주요 내용	적용일	비고
1	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산소발생기 임대비용 지원	• 시설 내 병상 대기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위해 산소발생기 임대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 지원 • (지급금액) 산소발생기 1대당 월 27만원 지급	'21.12.16 ~ 별도 공지시 까지	(1차)
2	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방역물품 등 구매비용 지원	• 코호트 격리로 인한 방역물품 구매 비용 등 지원 • (지급금액) 코호트 격리 기간 동안 수급자 1인당 일 10,000원 지급 * 해당일 외박비용 청구한 수급자는 제외		
3	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추가 급여비용 산정	•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종사자의 연장근로 및 업무 강도 강화 등에 따른 보상 지원 • (지급금액) 코호트 격리 기간 수급자 1인당 일 31,770원*을 가산하여 지급('21년 31,770원, '22년 33,080원) * 해당일 외박비용 청구한 수급자는 제외 ※ 가산금은 해당 시설에서 코호트 격리되어 실 근무한 종사자에게 전액 지급	'21.7.1. 기준 코호트기관~ 별도 공지시 까지	신설 (2차)
4	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간호사 주사 비용 지원	• 코호트 격리 시설에서, 해당 기관에 소속된 간호(조무)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렉키로나주를 주사하는 경우 주사행위로 지급 • (지급금액) 렉키로나주를 확진된 수급자에게 1회 주사 당 65,000원 ※ 의사 처방에 따라 직접 주사한 시설 내 간호(조무)사에게 지급		
5	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계약의사 원주진찰비용 산정	• 코호트 격리 시설의 비확진 격리자에게 유·무선 전화, 화상 통신을 활용하여 진찰 또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산정 • (진찰횟수) 제한 없음 • (인정비용) 계약의사 재진 진찰비용의 100% - (본인부담금) 일반(20%), 감경(12%/8%), 의료급여(8%), 기초수급자(0%) ※ 방문비용(53,000원) 미지급	'21.12.28 ~ 별도 공지시 까지	

1.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산소발생기 임대비용 지원

- (대상) 코호트 격리 조치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- (내용) 시설 내 병상 대기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위해 산소발생기 임대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 지원
- (기준) 코호트 격리 조치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산소발생기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급
- (적용기간) '21.12.16. ~ 별도 공지시까지
 - * '21.12.16. 현재 코호트 격리중인 기관 및 이후 코호트 격리중인 기관에 별도 공지시까지 적용
- (지급금액) 산소발생기 1대당 월 총 27만원 지급
 - ① 산소발생기 임대비용 1대당 월 15만원
 - ② 산소발생기 임대시 소요 제반 비용(산소비강캐놀라·산소마스크 등 소모품 및 전기료 등) 1대당 월 12만원
 - * 코호트 격리 기간 중 임대한 산소발생기에 대하여 지급하며, 1대당 1개월 비용을 지급하고 일할 계산하지 않음
- (참고사항) 요양시설 내 산소발생기 임대·사용시 고려할 사항

- 1) 시설 내 중증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적정 수량을 구비하되, 산소발생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의사(계약의사 등) 진찰(유선 포함) 이후 사용
 - * 산소발생기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수급자의 급여제공기록지에 특이사항 기재 및 계약의사 등 유선상담내역 기재 필수
 - 2) 산소발생기 작동 등 기기 사용법 문의는 구입처를 통하여 진행
 - 3) 계약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, 코호트 기간이 1개월을 넘어가는 경우에 한해 연장 계약에 대한 비용산정 가능
 - 4) 코호트 격리된 시설에서 확진자가 사용한 장비를 임대업체에 반환시 원활한 소독 등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필요

- (청구기간) 청구 가능 기간 추후 공지
- (청구절차 등) 청구방법·절차는 추후 공지 예정
- (작성서류) 산소발생기 임대 계약서 및 영수증(임대 기간 및 임대 금액이 명시된 서류)을 반드시 5년간 보관

2.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방역물품 등 구매비용 지원

- (대상) 코호트 격리 조치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- (내용) 코호트 격리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량의 방호복 및 방역물품 구매, 폐기물 처리 등 비용 발생에 따른 비용 지원
- (기준) 코호트 격리 조치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해 코호트 격리 기간 동안 '방역물품 등 구매비용' 지원
- (적용기간) ① 또는 ② ~ 별도 공지시까지
 - ① '21.7.1. 기준 코호트 격리 중인 기관의 코호트 격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적용
 - ② '21.7.1. 이후 코호트 격리 조치된 기관에 코호트 격리 종료일까지 적용
- (지급금액) 코호트 격리 시설의 격리 기간 동안 수급자 1인당 일 10,000원의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
 - ※ 해당 일 외박비용 산정 수급자는 제외
- (청구기간) 청구 가능 기간 추후 공지
- (청구절차 등) 청구방법·절차는 추후 공지 예정
- (작성서류) 코호트 격리 기간(시작일 및 종료일)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, 격리일자별 수급자 명단(총 명수, 입·퇴소일, 외박일 등 급여제공여부 명시)을 반드시 5년간 보관

3.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추가 급여비용 산정

- (대상) 코호트 격리 조치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- (내용) 코호트 격리에 따른 종사자 연장근로 발생 및 업무 강도 강화 등에 따른 보상 지원
- (기준) 코호트 격리 기간 동안 발생한 급여비용을 가산하고, 해당 가산금을 코호트 격리되어 실 근무한 종사자에게 전액 지급
 - * 해당 가산금은 직종에 관계없이 코호트 격리되어 실제 근무한 종사자에게 실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급
- (적용기간) ① 또는 ② ~ 별도 공지시까지
 - ① '21.7.1. 기준 코호트 격리 중인 기관의 코호트 격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적용
 - ② '21.7.1. 이후 코호트 격리 조치된 기관에 코호트 격리 종료일까지 적용
- (지급금액) 코호트 격리 기간(시작일 및 종료일 포함)동안 수급자 1인당 일 31,770원*의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
 - * '21년 노인요양시설 1일당 급여비용 가중평균값인 63,540원의 50%. '22년 급여비용 변동 시 연동하여 가중평균값인 66,150원의 50%인 33,080원을 산정
 - ※ 해당 일 외박비용 산정 수급자는 제외
- (청구기간) 청구 가능 기간 추후 공지
- (청구절차 등) 청구방법·절차는 추후 공지 예정
- (작성서류) 코호트 격리 기간(시작일 및 종료일)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, 격리일자별 수급자 명단(총 명수, 입·퇴소일, 외박일 등 급여제공여부 명시), 해당 종사자의 임금명세서에 코호트 격리에 따른 보상 비용을 별도 표기하여 반드시 5년간 보관

4.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간호사 주사 비용 지원

- (대상) **코호트 격리 조치**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- (내용)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와는 달리,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간호사가 렉키로나주 주사 시 건강보험 지급이 되지 않아 장기요양재정을 통해 지원
- (기준) 코호트 격리 조치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**해당 기관에 소속된 간호(조무)사가 렉키로나주 주사(행위)시 비용 산정**
- (관련근거)
 - “동일 집단(코호트) 격리 노인요양시설 내 간호사의 주사행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알림” (요양보험운영과-5435호, 2021.12.2.)

-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 가능성
 - ▲ 상기와 같은 상황은 국가·지자체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(의료법 제33조)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가능
 - 의사의 현장 입회 없는 간호사(간호조무사)의 주사행위
 - ▲ 일반적으로 의사의 지도 감독은 의사가 같은 진료실 내에 있거나 최소한 지도·감독이 가능한 의료기관 내에 공존하여야 함을 의미
 - ▲ 다만, 위와 같이 동일 집단 격리된 요양원 내 의사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치료제 등 주사행위가 필요한 경우, 다음 요건*을 갖추어 간호사(간호조무사)가 주사행위를 수행할 수 있음
 - * 간호사(간호조무사)는 업무 수행 전 의사에게 충분한 교육을 받았을 것
 - * 업무 수행 전 유·무선 전화 등을 통하여 환자의 상태를 의사에게 알리고 특이사항이 있는 환자의 경우 그에 따른 지도·감독을 받을 것
 - “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내 렉키로나주 투여 안내 협조 요청” (요양보험운영과-5512호, 2021.12.8.)
- (적용기간) **‘21.12.28. ~ 별도 공지시까지**
 - * '21.12.16. 현재 코호트 격리중인 기관 및 이후 코호트 격리중인 기관에 별도 공지시까지 적용
- (지급금액) 렉키로나주를 확진된 수급자에게 **1회 주사당 65,000원** 지급
 - * 해당 금액은 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렉키로나주를 직접 주사한 시설 내 간호인력에게 지급
- (청구기간) 청구 가능 기간 추후 공지

- (청구절차 등) 청구방법·절차는 추후 공지 예정
- (작성서류) 코호트 격리 기간(시작일 및 종료일)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, 수급자의 확진통보서, 의사의 렉키로나주 처방 기록, 수급자의 건강 관리 기록부(주사제 투여·간호제공내용 란에 주사 투여 전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알리고 지도·감독을 받은 내용, 렉키로나주 투여량(mg) 및 주입 시작·종료일시, 이상 반응시 대응조치 등 기록), 해당 간호(조무)사의 임금명세서에 지원 비용을 별도 표기하여 반드시 5년간 보관

5.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계약의사의 원격진찰비용 산정

- (대상) **코호트 격리**된 장기요양기관의 **비확진 격리자**
 - ※ 격리자 중 확진자는 재택치료 대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른 관리 대상임
- (조건) 요양시설의 간호인력과 협업으로 유·무선 전화,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을 통해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찰 또는 필요시 원외처방전을 발행
 - ※ (적용제외) 요양시설은 코호트 중이나 개인별, 구역별로 격리 해제된 입소자
- (기준) 유·무선 전화 또는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진찰한 경우 **원외 처방전 발급과 상관없이 진찰비 지급**
 - ※ (적용제외) 문자메시지, SMS, 카카오톡 등 제외
- (적용기간) '**21. 12. 28. ~ 별도 공지시까지**
 - 유·무선 또는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진찰한 급여제공일부터 적용
- (진찰횟수) 코호트 격리 기간 내 제한 없음
- (인정비용) **계약의사 재진 진찰비용의 100% 지급**
 - ※ 방문비용(53,000원) 미지급
 - (본인부담금) 격리 해제 시까지 **본인부담률에 따라 부담**
 - * 일반(20%), 감경(12%/8%), 의료급여(8%), 기초수급자(0%)
 - (원외처방전) 건강보험 급여비용 청구(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)
- (진찰기록) 계약의사는 유선 또는 영상으로 진찰 및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포괄평가기록지 [Management Plan] 란에 **코호트 격리** 기간 및 진찰 내용 등을 작성하고 요양시설 방문 시 이관하여 보관
- (청구기간) 청구 가능기간 추후 공지하며, 청구시기는 관련 프로그램 전산개발 완료 후 별도 공지